

산학협력위원회 규정

제 1 조 본회 정관 제 4 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
- (1) 산학간 기술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
- (2) 학계, 연구계, 산업계와의 전기화학 관련기술에 관한 협조 증진
- (3) 연구용역, 자문등의 사업
- (4) 기술상 추천에 관한 사항
- (5) 기타 산학연협동을 위한 제반 사업

제 2 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위 원 장 1 명

상임위원 약간명

실무위원 약간명

제 3 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제 4 조 위원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5 조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. 임기는 당해년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.

제 6 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7 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